

울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모집 공고

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(이하 자유무역지역법)」에 따라 무역 진흥, 외국인투자 유치,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 울산 자유무역지역 內 표준공장동에 입주할 기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5년 9월 15일

산업통상자원부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

□ 모집 개요

- 모집대상 : 표준공장 중공업2동 1~4층 총 13,496m²
* 붙임 2 : 표준공장 위치도
- 위 치 :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처용산업3길 135
- 시행자(관리권자) : 산업통상자원부장관(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)
- 임대규모 및 임대료[표1]

구 분	입주면적·대상	월 임대료(m ² 당) *부가세 별도	층고	비고
1층	3,374m ²	미정	9m	
2~4층	10,122m ²	미정	6m	
시설	바닥 하중	(1~2층) 1,600 kgf/m ² , (3~4층) 600 kgf/m ²		
	화물 엘리베이터	5톤 (지게차 무게 포함)		

* 공용면적 일부를 포함하여 임대차 계약면적을 산출함. 사용승인 후 입주면적은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음

** 임대료는 건물 준공 후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결정 예정

*** 입주계약 시 보증금: 월 임대료 × 6, 공동부담금 : 미정

※ (참고) 공고일 기준 중공업1동 월임대료(m²당) : 660원, 공동부담금 : 월 13.24원/m²

□ 입주신청대상 (입주자격)

- 신청일 현재 울산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지 않은 기업으로서,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자 중 다음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기업
 - ① (제조업) 입주계약신청일 이전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50%(대기업), 40%(중견), 30%(중소)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
 - ② (국내복귀 기업) 입주계약신청일 이전 3년의 기간 중 복귀 이전 총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 비중이 30% (대기업, 중견), 20%(중소)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
 - ③ (외국인투자기업)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자가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% 이상이며, 입주계약 신청일 이전 3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30%이상인 기간이 연속 1년 이상
- * 신설법인은 수출비중 미적용. 단, 3년 이내 요건 충족 필요
- 단,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 결정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입주할 수 없음

□ 입주 제한 업종

-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에 따른 업종
- 「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」 제10조에 따라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을 해하는(소음, 진동, 대기, 폐수, 폐기물 등) 물품을 제조·가공하는 업종

□ 입주업체 지원사항 (인센티브)

< 외국인투자 혜택 >

- (임대료 감면)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13조2제1항 또는 제3항에 의거 해당업체 감면가능

- 외국인투자 (감면시점부터 10년간 적용)		
공통조건 : 외투비율 30%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	1. 제조업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	75% 감면
	2. 미화 25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70명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	75% 감면
	3. 미화 25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150명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	90% 감면
	4. 부품소재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	100% 무상
	5.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에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1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	100% 무상
	6. 미화 25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	100% 무상

* 기타 임대료 감면 내용은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공고문 참조

- (조세 감면) 지방세(취득세, 재산세)는 지자체의 감면 조례에 따름

< 입주 후 혜택 >

- (관세특례) 외국물품에 대하여 비관세 적용하여,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 면제 또는 환급
- (부가세 영세율) 반입 신고한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혜택 제공
- (역외작업 허용) 생산제품 공정 일부를 국내 관세지역에서 가공·수출 가능, 가공에 필요한 외국 물품은 국내 관세지역 반출 가능
- (교통유발부담금 면제) 입주기업체의 공장등에 대해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

□ 입주업체 준수사항

- 입주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, 150일 이내에 시설물 설치 허가를 득해야 함
-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제30조, 제31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물품 반입·반출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함
 - ① 물품의 반입·수입시 관세 유보를 원할 경우 세관에 신고
 - ② 내국물품의 반출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
 - ③ 관세청에 상기 ①과 ②를 이행하기 위한 관리 부호 신청

□ 입주계약 절차



* 입주는 모집 기간 종료 후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되고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결격사유 발생 시 입주·임대 계약 체결 불가

가. 입주신청

- 신청기간 : 2025. 9. 15.(월) ~ 2025. 10. 24.(금) 18:00까지
- 접수처 :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수출산업과(2층)
 - 주소 : (44988)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처용산업3길 162
 - * 사무실 전화 : 052-240-6033 / 팩스 : 052-240-6092
- (접수방법)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(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)
- (입주상담) 입주자격 유무(외국인투자, 수출주목적 기업 등) 및 적정 임대 공간, 업종, 투자시설, 사업성, 환경 등 검토
- 문의처

구분	세부사항	부서	연락처
입주 모집	신청 자격, 심사 절차, 제출 서류 등 모집 전반	수출산업과	052-240-6033
시설 안내	건물 제원, 설비 등 시설 세부사항	수출산업과	052-240-6035

- (신청서류) 붙임의 제출서류 목록 ※ 서류 작성 시 사전 상담 후 신청 권장

나. 입주기업 선정위원회 개최

- (심사 일자) 모집공고 기간 후 개별 안내
- (위원 구성) 위원회 1/2이상 외부인사로 구성
- (심사 방법) 사업계획서 등 서류 평가(필요시 내용 발표 및 현장 방문)
- (평가 기준) 적격성, 성장가능성,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
- (선정 방법) 평가 기준에 따라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기업 선정
- (최종 선정) : 11월 중 예정(선정기업 개별통보)
* 입주기업 선정 후 잔여공간에 대해서는 공모 등 재추진 예정

□ 입주계약 해지 요건

- 입주계약 체결 후 사업계획서대로 공장을 운영하지 않거나, 제조 시설 중심으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

붙임

제출서류 목록

연번	내용	비고
1	입주수요신청서 1부	붙임1 양식
2	사업계획서 7부 * 시설배치계획, 자본조달계획, 수출계획 등 구체적 기술	붙임2 양식
3	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등 매출 증빙 서류	최근 3개년
4	재무제표 1부	최근 3개년 국세청발급 분
5	수출(직접/간접) 실적증명서 각 1부 *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8조에 따른 증명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	최근 3개년
6	4대 보험가입확인서 등 고용 증빙 서류	1개월 이내
7	외국인투자증명서 1부	해당 시
8	개인정보 제공·활용 동의서 1부 (등기이사 인적사항 및 결격사유 확인)	붙임3 양식
9	인감증명서 1부	1개월 이내
10	사업자등록증 1부	
11	법인등기부등본 1부	1개월 이내
12	평가 및 입주에 필요한 서류 (기술관련 인증, 수출거래계약서, 지역 한정 산업 증빙서류 등)	해당 시
13	특허증명서, 신용평가확인서, 연구개발연구소 인정서 각 1부	해당 시
14	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	

